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5. 11.

社會建設委員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20호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악취  
관리는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악취저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악취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악취지도의 작성,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라. 준용(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악취방지법」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에 3억원 반영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원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3)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5)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20. 2. 20. ~ 3. 1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건은 생활악취 발생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시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에서는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악취는 주민의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되어 주민의 건강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생활악취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소 미비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만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생활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관리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캡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